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7. 8.(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KBS-2TV '부자의 탄생' 재심에 관한 건 (2010-40-157)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부자의 탄생'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10. 5. 19)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 청구(10. 6. 11) 건에 대하여, 원심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 원심 결정 내용 :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반복하여 방송한 KBS-2TV '부자의 탄생'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함.

2)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0-40-158) (비공개)

사. 보고사항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 '10. 9. 23일 시행 예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양환정 정책총괄과장으로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방송통신콘텐츠)**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구분

<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범위(안 제2조) >

1. 방송통신콘텐츠의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콘텐츠의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인력양성, 장비·시설, 해외진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0호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방송통신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방송통신광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의 범위(안 제3조) >

1. 방송통신광고의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광고의 운영·편성·판매·진흥·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광고의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보급을 위한 기술개발·표준화·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광고의 확산과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관련 사항 규정

-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위원 중에서 지명(안 제24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안 제25조)

※ 심의회 위원(10명 이내)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법 제27조)

·심의회는 방송분담금,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이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23조)

- **(방송사 분담금)**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법 제25조)하되,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안 제16조)

- **(분담금 경감)**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경감,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안 제20조)

③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 연구활동 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 방송통신 기술 기준·표준화, 방송통신재난관리 관련 사항 등은 기존 법령(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등) 내용을 이관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6:00)

※ 11:20 정회, 15:30 속개